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9. 10 선고 2023가단672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운

피고A

변론 종결2024. 7. 23.

판결 선고2024. 9. 10.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2. 12. 5. 체결된 채권양도 · 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제1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C에게 위 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한 B의 아들이다.

나. 보증계약의 체결 및 대출

1) 원고는 2017. 1. 10., 2022. 2. 22.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보증계약(이하 2017. 1. 10.자 계약을 '이 사건 제1보증계약', 2022. 2. 22.자 계약을 '이 사건 제2보증계약'이라고 하고 위 각 보증계약 모두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각 보증서를 발급·교부하였다.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고 하고, D은행과 함께 '이 사건 각 은행'이라고 한다)에 위 각 보증서를 제출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2017. 1. 10.	2025. 1. 10.	255,000,000원	D은행	300,000,000원
2022. 2. 22.	2023. 2. 22.	100,000,000원	E은행	100,000,000원

2) 한편,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은 보증료의 납부, 사전구상권의 발생 및 상환범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제3조 보증료 등의 납부

③ 본인(B)이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5조 사전구상

① 본인(B)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8. 원고가 이 약정에 의한 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B)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본인(B)과 연대보증인은 원고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3)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제10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을 연 8%로 정하고 있다.

다. 보증사고통지

원고는 B에 대하여, 2023. 1. 10. D은행으로부터 2023. 1. 10.자 폐업에 따른 보증사고통지를, 2023. 2. 9. E은행으로부터 2023. 1. 26. 기한이익의 상실에 따른 보증사고통지를 각 받았다.

라. 원고의 보증채무 등 이행

1) 원고는 보증사고통지 후 이 사건 각 은행들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B을 대위하여, 2023. 4. 21. 이 사건 제1보증계약에 따라 D은행에 195,423,531원, 2023. 3. 10. 이 사건 제2보증계약에 따라 E은행에 101,136,917원을 각 변제하였다. B은 같은 날 이 사건 제1보증계약에 따른 원고의 대위변제금 중 1,925,650원을 원고에게 변제함으로써 위 보증계약에 따른 원고의 대위변제금은

193,497,881원(= 195,423,531원 - 1,925,650원)이 되었다.

2) B에 대하여는 2023. 3. 10. 이 사건 제2보증계약에 따른 추가보증료가 69,86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3. 2. 28.부터 2023. 3. 22.까지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 비용으로 합계 1,779,080원을 지출한 후 그 중 46,251원을 B으로부터 변제받았다.

마.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차인의 변경

1) B은 2022. 9. 15. 파주시 F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G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H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각 건물(2동), I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 임대차기간 2022. 9. 15.부터 2023. 9. 1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22. 12. 5. B으로부터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 지위를 양수하기로 하고 C와 사이에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B의 재산상태

1) B의 2022. 12. 5. 당시 재산 상태는 아래와 같다.

D은행	대출채무	189,451,653원 ¹⁾ 원고는 2023. 1. 10. 기준 대출잔액만을 주장, 입증하였을 뿐(갑 제3호증의 1), 2022. 12. 5. 당시의 정확한 대출원리금 잔액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출원금만을 당시의 소극채무로 산정하였다.	임대차보증금고양시 덕양구 K아파트 L호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이라고 한다)	100,000,000
E은행	대출채무	99,989,585원 ²⁾ 원고는 2023. 1. 10. 기준 대출잔액만을 주장, 입증하였을 뿐(갑 제3호증의 2), 2022. 12. 5. 당시의 정확한 대출원리금 잔액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출원금만을 당시의 소극채무로 산정하였다.	320,000,000 ³⁾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의 2022. 12. 5. 당시 가액을 320,000,000원으로 산정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J	보증채무	2,000,000원		
중소기업은행	대출채무	167,849,935원		

2)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은행이 위와 같은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21. 4. 20.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8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설정해두고 있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제1항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피고의 종전 임대차 계약인수 당시인 2022. 12. 5.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점, ② B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며, 종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2023. 1. 10. B이 사업장을 폐업하여 보증사고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위 임대차 계약인수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B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은행으로부터 2023. 1. 10. 및 2023. 2. 9. 각 보증사고통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제5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원고의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고 그 직후 원고가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B을 대위하여 대위변제함으로써 결국 사후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인바, 이는 합계 296,437,487원[= 193,497,881원(이 사건 제1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 중 잔금) + 101,136,917원(이 사건 제2보증계약에 따른 대위변제금) + 69,860원(이 사건 제2보증계약에 따른 추가보증료) + 1,732,829원(법적 절차 비용 1,779,080원 - 변제된 46,2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다.

나. B의 무자력 여부 및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피고의 임대차 계약인수 당시인 2022. 12. 5.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및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의 당시 가액(320,000,000원) 중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부분(167,849,935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52,150,065원(= 320,000,000원 - 167,849,935원)을 합한 252,150,065원(= 100,000,000원 + 152,150,065원)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의하여 담보되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291,441,238원(= 189,451,653원 +

99,989,585원 + 2,000,000원)이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B의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피고에게 B의 C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한 행위는 원고 등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사해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제1항에서 인정된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과 피고는 부자관계로 피고는 B 운영의 사업장에서 15년 넘게 근무하면서 B 운영의 사업장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던 점, ② B은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B에게 실질적으로 반대급부를 지급한 바가 없고, 다만 B으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으로 이를 대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B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 C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하운

별지

1) 원고는 2023. 1. 10. 기준 대출잔액만을 주장, 입증하였을 뿐(갑 제3호증의 1), 2022. 12. 5. 당시의 정확한 대출원리금 잔액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출원금만을 당시의 소극채무로 산정하였다.

2) 원고는 2023. 1. 10. 기준 대출잔액만을 주장, 입증하였을 뿐(갑 제3호증의 2), 2022. 12. 5. 당시의 정확한 대출원리금 잔액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출원금만을 당시의 소극채무로 산정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의 2022. 12. 5. 당시 가액을 320,000,000원으로 산정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